

본인은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입니다. 5월 26일 12시 50분경 동학년교사 4명과 운동장 스탠드에 앉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운동장에서 학생놀이활동 임장지도 중 학생들이 던지는 피구 공이 주차된 차량을 스치는 등의 행위가 있어 이를 지도하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려는 순간 동료 남교사(이후 가해자로 지칭)가 본인의 오른쪽 손목을 낚아채며 저지하였습니다. 본인이 너무 놀라 손을 빼려고 하였으나 가해자가 더욱 강하게 블잡으며 " 진정해, 진정해, 끝났어, 끝났어"라고 말하며 놓아주지 않다가 얼마간 시간이 흐르고 놓아주었습니다. 13시 경 본인은 교실로 돌아왔으나 원치 않은 스킨십으로 매우 불쾌감을 느꼈으며 손목 통증(남교사의 손자국이 남음)이 있어 보건실에 갔습니다. 보건교사에게 통증이 생긴 경위를 설명한 후 연고와 테이핑 처방을 받았습니다. (22년도에 오른쪽 손목을 다쳐 치료받

은 적이 있음) 이후 가해자에게 손목을 붙잡을 상황이 아닌데 왜 잡았는가, 손목이 아파서 보건실에서 처치를 받았다며 강하게 항의하였으나 가해자는 웃으며 "선생님 고정하시라고 그랬죠."하며 별일아닌 듯 말하였습니다. 이후 본인은 자택 인근 정형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MRI 관찰 소견이 있어 수부전문 병원으로 옮겨 우측 척골충돌증후군 및 삼각섬유연골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손목부상보다 난데없는 스킨십이 매우 불쾌하였으나 저연차 교사의 실수라 생각하고 참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6월 1일 12시 30분경 점심식사 후 본인이 양치를 하고 있는데 가해자가 본인의 등뒤에서 오른쪽 상완 부위를 잡으며 말을 붙여와 본인이 팔을 세차게 빼내며 거부의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가해자는 "저때문에 다치셨다고 해서..죄송해요"하고 지나갔습니다.

이후 본인은 가해자의 행위와 무례한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스킨십 재발방지 및 접근 자체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겠다며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태

도를 취했습니다. 학교 관리자 및 동료교사들이 가해자에게 본인이 힘들어 하니 최대한 기피를 해주라고 설득하였으나 자신이 왜 그래야 하냐며 자신도 힘들어서 정신과를 다니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심한 수치심과 분노를 느껴 정신과에서 중증도 우울 에피소드 및 불안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6개월 이상의 안정가료 진단을 받아 현재 2개월 병가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